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영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9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1일

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인호, 김춘례,
김태호, 노승재, 문병훈,
박기재, 안광석, 조상호,
최기찬, 황규복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임.
- 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음. 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국토계획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항외에”를 “사항 외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노점상”을 “거리가게”로 순화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<u>사항외에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노점상</u>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</p> <p>4.~5. (생략)</p>	<p>제3조(관리계획) ① ----- ----- -----<u>사항 외에</u>----- -----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거리가게</u> ----- -----</p> <p>4.~5. (현행과 같음)</p>